

## 【 영락소규모요양원(입소시설) 운영규정 개요 】

**제36조(입소정원·대상·모집)** 본 기관의 입소정원, 대상,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**입소정원** : 17명
2. **입소대상**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적용한다.
  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대상자(1~5등급)
  - 2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(단,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)
  - 3)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질환이 없는 어르신
3. **모집방법** : 보호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공단 홈페이지,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.

**제37조 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** 입소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**계약기간** :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서비스 계약 시작일 부터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2. **계약목적** :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 또한,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3. **입소보증금** :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. 단 운영에 필요하다가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
4. **이용비용 본인부담금**
  - 1)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/100
  - 2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
  - 3)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경감
  - 4)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음-식사재료비(간식비포함), 상급침실 이용료, 개인 약제비 및 진료비, 프로그램비, 이.미용비 등
  - 5) 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
    - ①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,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
    - ②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(실비)을 수납할 수 있음. (필요시 개인 프로그램, 교통비 등)

### 7. 계약의 해지

- 1) **입소자의 계약해지** :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입소자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.
- 2) **시설의 계약해지** :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.
  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 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 -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  -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 -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때
  -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

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유보가능

-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⑧ 계약서 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,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  
능
- ⑨ 어르신 및 직원간의 성희롱 및 언어적 폭력 발생 시(단,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  
지한다.)

### 제39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1. **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** :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급여수가에 따라서 적용하며 비급여 부분은 시설운영의 필요시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단, 급여 비용반영 2개월 전에 공시
  - 1) 등급의 변경 시 : 재계약을 작성한다.
  - 2)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 시 : 서비스이용기간 내 변동수가발생시 변동내용에 대한 것만 변경계약을 작성 하도록 한다.
  - 3)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시 : 재계약을 작성한다.
  - 4) 시설운영비의 증가 : 물가의 변동이 심하여 비급여 상승할 수 있으며 변동내용에 대한 부분만 변경계약을 작성하도록 한다.
2. **월 이용료**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며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.
  - 1) 상급침실 이용료 : 20,000원(1인실, 특실)/12,000원(2인실)
  - 2) 식재료비(1식) : 4,000원
  - 3) 간식비(1회) : 1,000원
  - 4) 이/미용료, 진료비 및 약제비 등 : 발생시

제45조(제출서류)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.

1. 장기요양인정서
2.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3. 가족관계증명서
4. 감염병에 대한 건강검진서(폐결핵, 매독여부, B형 감염 등 필수)
5. 신분증 사본
6. 주민등록 등본(필요시)
7. 처방전
8. 코로나 검사 결과
9. 그 외 필요한 서류

제43조(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) 본 기관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해야하며,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2.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영락소규모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2조(퇴소) 어르신은 다음의 사항이 있을 시 퇴소 조치할 수 있다.

1. 직원을 모욕하거나 직원 또는 다른 거주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어르신
2. 직원에게 성희롱 및 거주자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자
3. 어르신을 선동하여 원의 평화를 파괴하고 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
4.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일삼는 자
5. 서비스이용료 2회 이상 미납 어르신

### 제53조(퇴소절차)

1. 기관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2. 입소자 및 보호자의 계약 해지 신청시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고 입소자의 보관물 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통 보 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3. 입소자는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본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